등록번호	여성가족과-3159
등록일자	2026. 2. 10.
결재일자	2026. 2. 10.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여성권익증진팀장	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국장
			전결 2026. 2. 10.
이상은	김연주	김소영	박설연

2026년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지원사업 추진계획

요 약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사업목적 :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인식제고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제공

❍ 지원내용 :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여성폭력예방콘텐츠 제작·보급 지원

❍ 사 업 명

사업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경계선 지능대상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 개발사업
사업대상	일반시민 (교육취학계층 우선)	경계선 지능인	일반시민 등
세부내용	전문위촉강사 통한 대상별 맞춤 통합예방교육 지원	대상자 진단·선별, 유관기관연계, 1:1맞춤교육 실시	신종폭력예방 주제 교육 및 콘텐츠 지원
수행기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공모예정 (1개소)	공모예정 (1~2개소)
선정방법	市 지정	전문기관(단체)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	
사업예산	90,906천원	15,000천원	50,000천원
재원구분	국시비(5:5) 보조	시비,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기금, 민간경상보조

❍ 사업예산 : 155백만원 (국 45, 시 110) ※ 자부담 별도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2026년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지원사업 추진계획 (요약)

▢ 사업개요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목적)**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제공

❍ **(기간)** 2026. 1. ~ 12.

❍ **(내용)**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여성폭력예방콘텐츠 제작·보급 지원

사업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경계선 지능대상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 개발사업
사업대상	일반시민 (교육취약계층 우선)	경계선 지능인	일반시민 등
세부내용	전문위촉강사를 통한 대상별 맞춤 통합예방교육 지원	대상자 진단·선별, 유관기관연계, 1:1맞춤교육 실시	신종폭력(스토킹·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예방을 주제로 교육 및 콘텐츠 지원
수행기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공모예정 (1개소)	공모예정 (1~2개소)
선정방법	市 지정	전문기관(단체)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	
사업예산	90,906천원	15,000천원 (자부담 별도)	50,000천원 (자부담 별도)
재원구분	국시비(5:5) 보조	시비,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기금, 민간경상보조

▢ '25년 사업성과 : 473회 9,194명 지원

사업명	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경계선 지능대상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 개발사업
실 적	**473회 9,194명**	291회 6,552명	82회 82명 (실인원 9명 1:1교육)	100회 2,560명

* 콘텐츠 개발사업 콘텐츠 수, 유튜브 조회수는 실적 계에서 제외

▢ '26년 주요 추진사항 및 일정

❍ 신종범죄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의성 높은 맞춤형 콘텐츠**로 **확대**

❍ 교육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 우선 교육, 토론식 참여체험 등 형식 다양화로 **실효성 강화**

❍ 공모 및 접수(2.12.~3.4.) → 사업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선정(3월) → 보조금교부 및 사업수행(4~11월) → 정산 및 평가(12월)

2026년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도모

□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6조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6조

○ 「부산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 조례」 제5조

○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배경

○ 최근 AI기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의 다양성과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고, 신종·복합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사전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조례 관련 조항] 예방교육 및 홍보 등 필요성 증대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등) : '23. 12. 27. 본조 신설

-「부산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 조례」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 '24. 9. 25. 본조 신설

○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폭력예방교육 체계 개편」 발표('25.12.19.)

- 인권의식 향상 등을 위한 통합시민교육 및 토론식 참여·체험 등 교육 형식 다양화하여 실효성 강화 필요

○ 기존 폭력예방교육은 지식 전달에 효과적인 방식이나, 강의식 ·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새롭게 대두되는 신종 · 복합폭력 예방에

어려움 발생.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필요

○ 경계선지능인(IQ70~85범주)은 지적능력 제한 및 상황의 인식 판단 능력의 저하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나, 외관상으로는 일반지능인과 구별이 불가하고 법적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화된 보호장치가 부재하거나 관련 지원이 불가하여 관련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교육 필요성 증대

※「경계성 기능 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 방안연구(2020)」(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발간)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및 내용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대상 : 일반시민(교육 취약계층 위주)
- 내용 : 전문 위촉 강사를 통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통합폭력예방교육 지원

○ 경계선 지능 대상 폭력예방교육

- 대상 : 경계선 지능인 및 양육자
- 내용 : 대상자 진단·선정, 1:1맞춤교육, 양육코칭프로그램 등 지원

○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개발

- 대상 : 일반시민
- 내용 : 신종폭력예방을 주제로 대상별 교육 및 콘텐츠 지원

□ 추진방법

○ 전문기관 공모에 의한 공개 경쟁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 예산액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90,906천원 (국 45,453, 시 45,453)

○ 경계선 지능 대상 폭력예방교육 : 15,000천원 (시비 100%)

○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개발사업 : 50,000천원 (시비 100%, 양성평등기금)

Ⅱ 2025년 사업 성과

□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

사업명	교육대상	수행기관	목표		실적		비고
			사업량(회)	인원(명)	사업량(회)	인원(명)	추진률
계		**4개소**	**505**	**8,120**	**473**	**9,194**	**99%**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주민, 노인 등 취약계층 우선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285	6,000	291	6,552	102%
경계선 지능 대상 폭력예방교육	경계선 지능인	동구 장애인복지관	120	120 (실인원12명)	82	82 (실인원9명)	68.3%
폭력예방 교육 및 콘텐츠 개발사업*	대학생, 장애인, 일반시민 등	부산여성 연대회의	100	2,000	100	2,560	128%
	일반시민	(사)성평등위아*	10 (콘텐츠 수)	10,000 (유튜브 조회수)	10 (콘텐츠 수)	20,734 (유튜브 조회수)	207%

* (참고) 콘텐츠 개발사업 콘텐츠 수 및 유튜브 조회수는 목표 및 실적 합계에서 제외

□ 예산

(단위 : 천원, %)

사업명	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비고
		계	국	시	자부담	계	국	시	자부담	집행율
계	**4개소**	**161,330**	**44,815**	**109,815**	**6,700**	**158,432**	**44,815**	**106,976**	**6,641**	**9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89,630	44,815	44,815	-	89,630	44,815	44,815	-	100%
경계선 지능 대상 폭력예방교육	동구 장애인복지관	16,700	-	15,000	1,700	13,802	-	12,161	1,641	82.6%
폭력예방 교육 및 콘텐츠 개발사업	소계	55,000	-	50,000	5,000	55,000	-	50,000	5,000	100%
	부산여성 연대회의	27,500	-	25,000	2,500	27,500	-	25,000	2,500	100%
	(사)성평등위아	27,500	-	25,000	2,500	27,500	-	25,000	2,500	100%

□ 사업성과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대상군 발굴 확대 : 장애아동·청소년부터 학부모·시설 종사자까지 확장
- '교제폭력 예방교육' 신설 추진 : 전체 교육의 8% (23회, 474명)
- 강사 전문성 관리로 교육 품질 안정화 : 강사 40명 (전문33, 일반7)
  ▹ 모니터링(27회), 워크숍(6회), 소모임(14회) 운영 등 전문성 강화
- '2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평가 '우수'

※ 성평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평가 2년연속 '우수'
- '24년 : '우수'기관 선정 (전체 18개소, 우수기관 5개소 ▸ **부산**, 전남, 경기남부, 충북, 전북)
- '25년 : '우수'기관 선정 (전체 18개소, 우수기관 4개소 ▸ **부산**, 전남, 경북, 세종)

○ 경계선 지능 대상 폭력예방교육

- 접수상담 12명, 진단평가 12명, 평가회의 12건, 개인별 지원 실시 9명(82회)
  *접수상담 12명중 3명은 서면평가로 대체(1년이내 진단평가 결과有), 개인별지원실시 1명은 2회기 후 개입종결(건강사유)
- 1:1 부모코칭 8회, 전문적학습공동체 3회 운영(실무자 등 공동연구, 41명 참석)
-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협력 : 40개 기관 MOU 유지
- 홍보물 3,000부 배포, 성과공유회 실시(11.14.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

○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 개발사업

1) 폭력예방교육 "존중과 배려로 만드는 안전한 세상"
- 대학생, 장애인,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 대상 교육 실시 : 100회, 2,560명
-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안) 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

2) 콘텐츠 개발사업 "디지털성범죄 OUT! Faker Chaser 프로젝트"
- 콘텐츠 기획 및 촬영·편집, 자문·내부회의, 최종 상영회 등 실시
- 부산시 소재 10개교 홍보, 학생 1천명 이상 참여로 디지털 성범죄 인식 제고
- 유튜브 콘텐츠 게시(10화, 50초 쇼츠 형식), 영상 조회수 2만건 돌파('25.12.20.기준)

Ⅲ 2026년 사업 추진계획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

1 운영 방향

○ 교육 기회·접근성 취약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 시의성 있는 교육 대상 발굴 및 교육 주제 선정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내 사업 간 연계 추진 활성화

2 추진내용

○ 목표량 : 연285회 이상

- 1회기 진행시 최소 10명 이상*

* 교육집단 특성에 따라 10명 미만일 경우 중앙 교육지원기관과 협의 후 교육 실시 가능

- 당초 계획 대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 市 사전 보고 및 승인 必

○ 교육기간 : 2026. 1월 ~ 12월

○ 교육대상

- (전략집단) 노인(여성 노인), 장애 아동 · 청소년 및 학부모 등
- (신규발굴)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기타 폭력예방교육 필요성이 높은 대상 등

○ 교육내용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강사에 의한 6개 분야*별 통합예방교육 지원

* 6개 교육 분야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 회당 1시간 (신청기관별 최대 3회 지원)

○ 수행기관 : 1개소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市 지정기간 : '26. 1. 1. ~ '26. 12. 31. (1년)

○ 예산액 : 90,906천원 (국 45,453, 시 45,453)

2 경계선 지능 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

1 운영 방향

○ 부산 지역 내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성별 및 연령 불문하여 교육 필요 대상자 수혜 범주 확대

○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경계선 지능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개별화된 지원 모델 확산

2 추진내용

○ 목표량 : 연100회 이상

- 1:1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1인당 10회 내외 지원
- 당초 계획 대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 市 사전 보고 및 승인 必

○ 교육기간 : 2026. 4월 ~ 11월

○ 교육대상 : 경계선지능인(IQ70~85범주)

단, '진단 범주에는 명확히 속하지 않으나 지역사회의 면밀한 1:1 교육 개입 필요로 하는 자'도 진단평가회의를 통해 대상 선정 가능

○ 교육내용

- 경계선 지능 대상자 진단·평가 및 지원대상자 선별
- 비장애인·지적장애 중간 수준의 1:1 맞춤형 성교육 실시(행동교정 병행)
-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지·심리치료 및 가족지원 등
  : 성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기회제공, 양육코칭 지원
- 폭력예방교육 종료 후 사후관리
  : 사후모니터링 실시 및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 수행기관 : 1개소 (공모예정)

○ 예산액 : 15,000천원 (자부담 10%이상*)

* 市 재정협력담당관-1084(2026.2.5.)호 관련

*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참고) 심사기준표 참조

3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 개발사업 운영 계획

1 운영 방향

○ 신종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유형에 따른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발굴

○ 발굴한 교육수요자에 대해 기관별 교육운영 매뉴얼 작성 제출 의무화

○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반영한 교수(안) 활용 및 교육 운영

○ 신종폭력예방 주제의 다양한 문화·디지털콘텐츠까지 확장

2 추진내용

○ 목표량

① 신종폭력예방교육 : 총100회 이상 (기관당 연100회* 이상)

- 1회기 진행시 최소 5~10명 이상 (최대 20명 내외)
- 당초 계획 대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 市 사전 보고 및 승인 必

* 신종폭력 : 스토킹·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포함) 등

* 공모 선정기관의 교육 운영 시간, 회기, 교육 수혜 대상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신종폭력예방콘텐츠

- 당초 계획 대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 市 사전 보고 및 승인 必

* 공모 선정기관의 콘텐츠 내용, 수혜 대상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26. 4월 ~ 11월

○ 사업대상

① 신종폭력예방교육

- 교육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전략집단*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노인(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대학생(유학생 포함) 등

- 교육수혜자 연령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령대별 맞춤형 교수(안) 제시 필요

* (예시) 15세와 18세 학생을 교육사업 대상자로 설정할 시 두 그룹에 제공되는 교육 콘텐츠를 연령별로 대상에 맞게 구성되어야 함.

② 신종폭력예방콘텐츠 : 일반시민

○ 사업내용 ※ 교육+콘텐츠 혼합으로 구성 가능

① 신종폭력예방교육

- 교육대상에 맞는 신종폭력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교육 실시
- 스토킹·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등 신종폭력예방 주제의 교육
- 2~3차시 내외 다회차 교육 구성 가능

② 신종폭력예방콘텐츠

- 신종폭력예방을 위한 문화·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보급
- 공연, 전시, 영상 등 파급력 있고 참신한 콘텐츠 구성

○ 수행기관 : 1~2개소

○ 예산액 : 개소당 25,000~50,000천원 (자부담 10%이상*)

* 市 재정협력담당관-1084(2026.2.5.)호 관련

*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참고) 심사기준표 참조

4 세부 추진 계획

사업 공모	공모신청서 접수	내부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제출
‘26. 2. 12.	‘26. 2. 12. ~ 3. 4..	‘26. 3. 5. ~ 9.	‘26. 3. 10.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사업 정산 및 평가
‘26. 3월 말	‘26. 4 ~ 11월 (중간점검 7~8월)	‘26. 12월~ ’26. 1월

1 사업공모 및 접수

○ 공모기간 : ’26. 2. 12.(목) ~ ‘26. 3. 4.(화) 18:00한

○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게재

-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접수 후 신청서류 일괄 문서24 제출

○ 공모내용 : 신청자격,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 ▸ (붙임1) 공고문 참조

○ 공모자격 (공통)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분사무소 포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 공고일 현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지부사무소 포함)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포함)

- 여성폭력 예방 및 교육사업에 실적이 있거나 역량·전문성이 있는 기관*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외

(경계선 지능 대상 폭력예방교육)

- 최근 2년 이내 경계선 지능 대상자 관련 사업 운영 이력이 있는 기관

(신종폭력예방교육)

- 2026년 市의 교육 추진 방침에 따른 사업 교수계획서 제출, 강사풀(pool)운영, 외부자문 및 모니터링 수행, 교육생 대상 평가계획 및 실시, 최종 교수(안) 제출 등이 가능한 기관

2 내부심사 및 심의·선정

○ 부서 자체 검토 ▸ (참고1) 심사기준표 참조

심사항목		배점 (100)
단체의 적격성	사업수행 전문성, 활동기간 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파급효과 등	20
사업비의 적정성	지원요구액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등	40
전년도 계획 대비 정산	당초계획의 보조금 비율 대비 정산시 실집행액 보조금 비율	20
부서자체 기준*	참신성, 교육 사각지대 발굴 노력, 홍보계획 등	10
기타(감점, 제외)	정산 지적사항, 세금 체납여부, 중복수급 여부 등	△5~20

※ 단일 기관 신청 시에도 심사 진행

※ 최소 기준 점수(평점 70점)에 미달할 경우, 재공모 실시 ▸ (붙임1) 공고문 참조

○ 심의 · 선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26. 3. 10.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 ‘26. 3월 말
- 사업 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기관 선정
- 결과통보 : ’26. 4월 초 선정기관 개별 통지 ※미선정기관 별도 통지 無

3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6. 4월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사본 등
- ’신종폭력예방교육‘의 경우 교육 착수 전, 최종 교수(안) 제출 필수

○ 보조금 교부 : ‘26. 4월

○ 사업수행 중 당초 사업계획(목표량, 예산액 등) 변경 필요시, 반드시 市 승인 후 변경 건에 대해서만 인정

4 사업관리, 정산 및 평가

○ 사업 월별 실적관리 추진 : 익월 5일까지 실적 제출

○ 사업 중간점검 실시 : ’26. 7~8월

- 사업 진행 및 회계처리 사항 등 확인 및 점검 (필요시 현지 조사 병행)

○ 사업 정산 및 평가 : ‘26. 12월 ~ ’27. 1월

-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통한 증빙서류 일체 등록·정산 실시
- 기관별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사업추진실적, 회계지침 준수여부 등
  (1차) 부서 → (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7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평가 결과 반영

Ⅳ 행정사항

□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접수(시 홈페이지, 보탬e) : ’26. 2. 12.~ 3. 4.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및 심의 : ’26. 3월 중

- 부서 자체 검토 및 심의자료 작성 : 기관 모집 완료 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26. 3. 10.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6. 3월 말

□ 사업자 선정·통보, 실행계획서 접수, 보조금 교부 : 선정 통보 후 즉시

□ 기관별 사업착수 : 보조금 교부 이후 ~ ’26. 11월

□ 월별 교육실적 보고 (수행기관→시) : 익월 5일 이내

□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 ~ ‘27. 1월

붙임 1. 2026년 경계선지능대상폭력예방교육 공고 각 1부.

2. 2026년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개발 공고 각 1부. 끝.

참고 **'26년 심사기준표**

심 사 항 목	심 사 지 표	배점 기준	평점
총계		100	
1. 단체의 적격성 (10점)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유** 1건당 1점(5건 이상 최대 5점) **무** 0점 ○ 사업 전문성과 전담인력이 있으며 적정인력으로 구성 **유** 3점 **무** 0점 ○ 단체의 활동 범위 □ 시전역: 2점 □ 일부지역에 국한: 0점	5 3 2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단체의 설립취지와 신청사업의 부합 여부,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여부 ㉮ 5~4점 ㉯ 3점 ㉰ 2~0점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 5~4점 ㉯ 3점 ㉰ 2~0점 ○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비 대비 수혜대상이 많은지, 파급효과가 큰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 10~8점 ㉯ 7~5점 ㉰ 4~0점	10 10	
3. 사업비의 적정성 (40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액의 적정성 -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 기준적용 여부와 산출 근거 유무 ※ 산출근거가 없거나 '1식' 등으로 표현하면 '㉰' 부여 ㉮ 10~8점 ㉯ 7~5점 ㉰ 4~0점 ○ 사업목적에 부합한 비목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 소모성경비, 자본적 경비, 법령의 근거없는 단체 운영비* 포함 여부 * 운영비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5~4점 ㉯ 3점 ㉰ 2~0점 ○ 총 사업비 중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 ① 50%이상 15점 ② 30%이상~50%미만 12점 ③ 20%이상~30%미만 9점 ④ 10%이상~20%미만 6점 ⑤ 5%이상~10%미만 3점 ⑥ 5%미만 0점 ○ 본 사업의 동일 단체에 대한 지속 지원 여부(올해 기준) ① 신규 10점 ② 1년(2024년부터 지원) 5점 ③ 2년(2023년부터 지원) 3점 ④ 3년 이상(2022년부터 지원 및 그 이전부터 지원된 사업) 0점	10 5 15 10	
4. 전년도 당초계획 대비 정산시 실 집 행 기 준 보조금비율 (20점)	○ 당초계획의 보조금 비율 대비 정산시 실집행액 보조금 비율 차이 ① 동일, 보조금비율 하향, 올해 신규사업 20점 ② 0%초과~2%까지 10점 ③ 2%초과~5%까지 5점 ④ 5%초과 0점 ※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정산 기준으로 실 집행액과 비율 기재 - 당초계획(단위: 천원) 총사업비 | | 보조금액 | **보조금 비율** | 자부담액 | 자부담 비율 10,000 | | 9,000 | | 1,000 | 10.00% - 정산기준(단위: 천원) 총사업비 | **실집행액** | 보조금 집행액 | **보조금 비율** | 자부담 집행액 | 자부담 비율 10,000 | 9,500 | 9,000 | | 500 | 5.26%	20	
5. 부서 자체 심사 기준 (10점)	○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른 부서 자체 심사기준 적용	10	
6. 기타	○ 최근 3년이내 집행검사 및 정산 지적사항이 있는 단체 **유** 1건당 △5점(6건 이상 최대 △30점) **무** 0점 - 지적사항 :	△5	
	○ 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유** △20점 **무** 0점 * 납세증명서 반드시 확인 후 [서식3 단체자기소개서]에 첨부 * 보탬e 공모등록시 온라인 자격검증 설정으로 사업자의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가능(법인사업자는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납세증명서 확인)	△20	
	○ 지방보조금 선정 제외 대상*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제3항제1호(수행배제(교부제한)) □ 예 □ 아니오 제2호(중복수급) □ 예 □ 아니오	선정 제외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 양성평등

분야	검토 및 고려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통계	☞ 성별분리통계를 생산·제시하였습니까?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2조) ■ 사업기초자료, 사업대상자, 수혜자, 사업성과, 결과보고 등 ■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국가통계포털 등 활용	□	■	
사업참여자	☞ 성별, 연령, 생활형태를 고려하여 기획·모집하였습니까? ■ 비혼, 1인가구,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생활 형태 고려 ■ 행사, 포럼, 컨퍼런스의 진행자, 발표자, 토론자 등 성별균형 고려 ■ 홍보, 모임시간 · 방법 등 다각화	■	□	
위원회	☞ 성별 균형 위촉하였습니까?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5조) ■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 60% 이하 구성	□	■	
건축 공간설계	☞ 성인지 공간 구성을 하였습니까? ■ 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 등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등 검토	□	■	
프로그램	☞ 양성평등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까? ■ 성인지감수성 교육,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 참여자의 성별 통계생산, 성별 만족도 조사 ■ 교육 과정 개발 시, 성별에 따른 교육 요구도 반영	■	□	
홍보	☞ 홍보물 제작 시, 성차별적 요소는 포함하지 않습니까? ■ 홍보물 기획 및 활용시 성별고정관념 및 성차별 표현 점검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시, 전문가 사전검토 가능	□	■	
용어	☞ 공문서 상에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저출산 → 저출생, 유모차 → 유아차, 부녀자 → 여성, 자매결연 → 상호결연, 수유실 → 아기쉼터, 맘카페 → 육아카페 등	■	□	

□ 정책소통

분야	검토 및 고려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수요자 분 석	☞ 정책수요대상(주요 타깃) 검토 ■ (연령·성별) 영유아,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전체 ■ (분야) 전문가, 장애인, 취약계층, 다문화, 경제인, 기타	■	□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위원회, 협의회, 전문기관, TF 등) ■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 설문조사, 토론회, 공모 등)	□	■	
홍보협조	☞ 홍보부서와 홍보방안 사전 협의 ■ 홍보컨설팅, 홍보전략회의 등 홍보기획 방안 등 협의	□	■	
홍보방안	☞ 정책(사업) 홍보방안 검토 ■ 보도자료, 브리핑, 설명회, 영상제작, 홍보물 제작·배부 등	□	■	
탄소중립 사전평가	☞ 정책사업 탄소중립 지표 검토 및 언론홍보 ■ (정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가능 사업 ■ (정성)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은 불가하나, 감축활동 기여 사업 ■ (적응) 기후변화 영향 완화, 재해·재난 등에 대응하는 사업 ☞ 온실가스 감축량 000tCO_2eq./년(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원단위 참고)	□	■	